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6. 28 선고 2022가단42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김형선, 백갑선, 유주상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6.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4,754,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농산물 유통업을 하다가 2020. 2. 6.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신용 등의 문제로 D를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하였다.

나. E은 C과 상의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투자하면서 2020. 12. 10.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E은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다가 2020. 2. 2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동탄농협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437,704,550원이 송금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242,9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아버지인데, 원고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C이 피고 명의의 위 각 금융기관 계좌를 사용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2020. 2. 2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1,437,704,550원을 송금받고는 원고에게 1,242,950,000원만을 입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94,754,550원(= 1,437,704,550원 - 1,242,95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4,754,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3 생략)는 피고의 아들인 C이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2020. 2. 2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동탄농협 (계좌번호 1생략)에서 피고 명의의 위 각 금융기관 계좌로 합계 1,437,704,550원이 송금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위 각 금융기관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위 금융기관 계좌로 합계 1,242,950,000원만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 차액인 194,754,550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